

목 차

간행사
머리말
일러두기
자서 自序

1. 부임편 赴任篇

- 제1조 수령의 임명 [제배除拜] / 17
- 제2조 부임의 행장 [치장治裝] / 27
- 제3조 하직 인사 [사조辭朝] / 32
- 제4조 부임의 행차 [계행啓行] / 39
- 제5조 임지의 부임 [상관上官] / 44
- 제6조 정사의 집무 [이사莅事] / 48

2. 율기편 律己篇

- 제1조 바른 몸가짐 [칙궁飭躬] / 60
- 제2조 청렴한 마음 [청심淸心] / 72
- 제3조 가정을 다스림 [제가齊家] / 90
- 제4조 청탁의 사절 [병객屏客] / 100
- 제5조 비용의 절약 [절용節用] / 107
- 제6조 은혜를 베풀음 [낙시樂施] / 115

3. 봉공편 奉公篇

- 제1조 덕화의 선포 [선화宣化] / 123
- 제2조 법규의 준수 [수법守法] / 129

12 목민심서

제3조 예의로 교제〔예제禮際〕 / 133

제4조 문서의 처리〔문보文報〕 / 144

제5조 공물의 수납〔공납貢納〕 / 154

제6조 파견에 임함〔왕역往役〕 / 162

4. 애민편 愛民篇

제1조 노인의 봉양〔양로養老〕 / 176

제2조 어린이의 보호〔자유慈幼〕 / 183

제3조 빈궁자의 구제〔진궁振窮〕 / 187

제4조 초상의 애도〔애상哀喪〕 / 191

제5조 병자의 우대〔관질寬疾〕 / 196

제6조 재난의 구제〔구재救災〕 / 200

5. 진황편 賑荒篇

제1조 물자의 비축〔비자備資〕 / 205

제2조 구제의 권유〔권분勸分〕 / 214

제3조 구제의 방법〔규모規模〕 / 225

제4조 구제의 시행〔설시設施〕 / 232

제5조 민생 안정책〔보력補力〕 / 240

제6조 상벌과 결산〔준사竣事〕 / 246

6. 해관편 解官篇

제1조 수령의 교체〔체대遞代〕 / 256

제2조 퇴직의 행장〔귀장歸裝〕 / 263

제3조 유임의 청원〔원류願留〕 / 265

제4조 사면의 애원〔걸유乞宥〕 / 269

제5조 사망의 애도〔은졸隱卒〕 / 270

제6조 선정의 유품〔유애遺愛〕 / 273

1. 부임편 赴任篇

제1조 수령의 임명 [제배除拜]

1.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 된다.

위(上)를 섬기는 자를 ‘백성[民]’이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를 ‘선비[士]’라 한다. 선비란 벼슬살이하는 것이니, 벼슬살이하는 자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서울의 관원과 개성 등의 유수留守들은 왕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직분으로 삼기도 하고, 혹 맡아서 지키는 것을 임무로 삼기도 하니, 조심하고 근신謹慎하면 아마 죄를 짓거나 뉘우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지방관인 부윤府尹·목사牧使·군수·현감 같은 수령守令만이 만민을 다스리는 자이니,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함이 마치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과도 같아서, 그것의 크고 작음만 다를 뿐, 그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니 이 벼슬을 어찌 스스로 구할 수 있겠는가?

옛날 중국에서 상공上公은 지방이 100리, 후작侯爵과 백작伯爵은 70리, 자작子爵과 남작男爵은 50리였으며, 50리가 못 되면 부용附庸이라 일렀는데, 그들은 모두 제후諸侯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큰 주州는 그 지방이 재상인 상공과 맞먹고, 중읍中邑은 후작과 백작에 맞먹으며, 하읍下邑은 자작과 남작에 맞먹고, 소읍小邑은 부용과 같으니, 그 벼슬 이름은 다름망정 그 직책은 옛날 제후의 바로 그것이다.

옛날 제후들에게는 정승이 있고, 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의 삼경三卿이 있으며, 대부大夫와 백관이 갖추어져 있어서, 제각기 그 일을 처리해나갔기 때문에 제후 노릇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오늘날의 수령은 홀로 만민 위에 우뚝 서서 좌수座首와 좌우별감左右別監 등 간사한 세 사람을 보좌補佐로 삼고, 6, 70명의 간사한 아전衙前을 보필로 삼으며, 사나운 자 몇 사람을 막빈幕賓으로 삼고, 폐악한 무리 10명을 하인下人으로 삼는다. 이들은 서로 끼리끼리 뭉쳐 수령 한 사람의 총명을 가리고, 사기詐欺와 농간弄奸을 일삼아서 만백성을 못살게 한다.

옛날 제후諸侯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어 대대로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혹 종신토록 등용되지 못하거나, 더러는 여러 대가 되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그 명분名分과 의리義理가 지극히 소중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악한 자가 있더라도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수령守令은 오래가야 혹 2년이요,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만에 바뀌어 마치 지나가는 여관의 손님과도 같다. 그러나 보좌·막빈·하인 따위들은 옛날 세습世襲하는 경상卿相들처럼 그 직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

주객主客의 처지가 이미 다르고 오래 있는 사람과 잠깐 다녀가

는 사람의 권한이 아주 다른데, 그들에게 군신君臣의 대의大義와 천지天地의 정분定分이 있을 리 없다.

비록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도피하였다가 손님인 수령이 떠난 뒤에 주인인 보좌·막번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예나 다름없이 안 녁과 부귀를 누리게 되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수령 노릇의 어려움은 공후작公侯爵보다도 백 배나 더 하니, 이 어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비록 덕망德望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엄威嚴이 없으면 하기 어렵고, 하고 싶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밝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 대체로 그런 능력能力이 없는 자가 수령이 되면 백성들은 그 해를 입어 곤궁하고 고통스러우며, 사람들이 비난하고 귀신이 책망하여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어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오늘날 무관武官들이 몸소 전형銓衡을 맡은 관리인 전관銓官에게 청탁하여 수령 되기를 빌어 얻는 버릇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어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재주와 슬기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구하는 사람도 스스로의 실력을 헤아리지 않고, 들어주는 자 또한 다시 더 묻고자 하지도 않으니, 이는 진실로 잘못된 일이다.

문신文臣으로 홍문관弘文館 관리나 승정원承政院 관리가 된 이는, 부모의 봉양을 위해 고을살이를 청하는 법이 있다. 아래에서 는 부모에 대한 효성 때문에 청하고 위에서는 효도 때문에 허락하는데, 그것이 풍습이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체로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늙었는데, 끼니도 잇기 어려운

것은 그 사정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딱한 일이지는 하다.

그러나 천지의 이치로 말하면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고르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고르는 법은 없다.

한 집안의 봉양을 위하여 만민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신하 된 자로서 만민에게 거두어다가 내 부모 봉양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요, 남의 임금 된 이가 만민에게 거두어다가 내 부모를 봉양하라고 허락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만약 재주 있고 도道를 지닌 사람이 스스로 제 능력을 헤아려 목민할 만하면, 글을 올려 자신을 천거하여 한 군을 다스리기를 청하는 것은 좋다. 그저 집이 가난하고 늙은 아버지의 봉양이 어렵다는 핑계로 한 군을 빌어 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옛날에는 임금을 모시고 경서經書를 강론하는 경연經筵에 참석하는 신하로서 본래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이가 어쩌다 수령이 되기를 바라면, 조정에서는 그 사람을 보내되 능하지 못할까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군민들도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을 모두 좋아하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후세에는 재주나 덕망이 없는 자가 이를 끌어대어 전례로 삼아, 집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모 봉양이 어렵지도 않은 자가 모두 염치없이 고을살이를 구하니 예禮가 아니다. 기필코 이런 예를 좇아서 안 된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연산군 7년, 1501~선조 3년, 1570)이 그의 문